

안산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9-86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0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, 개념 정의, 적용범위, 시장의 책무(안 제1조~제4조)

나.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(안 제5조)

-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.

다. 행정적·재정적 지원(안 제6조)

-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라.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
-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가. 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나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2】

다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3】

마.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5. 7. 30. ~ 2025. 8. 19. (20일간)

바. 기타 참고사항

- 1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4】

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
2.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
3.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, 전문기관,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부서		교통정책과
입	교통정책과장	이 동 규
안	교통정책팀장	백 대 현
자	담 당 자 (연 락 처)	김 연 순 (481-2975)

안산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9-864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10월 30일
제안자 : 도시환경위원장

수정이유

- 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, 이를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령체계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수정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안전교육 등의 위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.(안 제5조제3항)

안산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□ 안산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)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시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등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조(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